#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09

발의연월일: 2020. 8. 12.

발 의 자:류성걸·박덕흠·서병수

정희용・김은혜・金炳旭

윤재옥 · 최춘식 · 윤두현

김용판 · 홍석준 · 구자근

김예지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5년마다 실시됨에 따라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국회 제출일정을 법률 에서 정하여 행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 법률 제 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국회"를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을 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전반 에 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4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 기재정균형 유지) ① (생 략) 기재정균형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 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 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 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 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국 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을 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 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새로 수립 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